

학 칙

2002. 09. 01. 제정
2013. 09. 01. 개정
2016. 05. 01. 개정
2016. 09. 01. 개정
2016. 10. 01. 개정
2017. 02. 20. 개정
2017. 09. 0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교는 영어 지도 및 영어교재 개발의 이론 및 실재를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이라 함은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2. “전임교원” 이라 함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말한다.

제2장 학교조직 및 학생정원

제4조(설치과정) ①본교에는 석사학위 과정을 둔다.

②본교에 학위과정으로 두개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을 둘 수 있다.

제5조(학과와 정원) ①본교에는 영어지도학과와 영어교재개발학과를 둔다.

②본교에 설치하는 학과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연구과정) ①본교의 학위과정 외 특정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학생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②본교의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

라야 한다.

③연구생으로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한다.

④기타 연구생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학·연·산 협동과정) 본교에는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8조(수업연한) 본교의 석사학위 과정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9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장 학년 및 학기

제10조(학년, 학기) ①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봄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을학기는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

③다만,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제5장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1조(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이상으로 한다.

②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2조(교원의 교수시간)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휴업) ①정기 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한다.

②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제6장 입학, 편입학, 재입학

제14조(입학시기) 학생의 입학 및 재입학은 매 학기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5조(입학전형횟수) 본교는 매년 1회 이상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제16조(모집방법) 신입생은 학과별로 모집한다.

제17조(입학지원자격) ①본교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 소지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지원할 수 없다. 단, 재학기간 동안 휴직하는 교직원은 지원할 수 있다. 외국 국적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경우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외국인으로 본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게는 제22조에 의거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절차) 본교 각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전공분야) 지원자는 출신학부, 학과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20조(입학전형위원회) 대학원위원회는 입학고사의 관리, 시행을 위한 입학전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제21조(입학허가) ①입학지원 절차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공고한다.

②신입생 선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신입생 사정원칙에 의한다.

③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수업료와 입학금 및 기타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의2(편입학) ①편입학은 입학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지원자격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한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본교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정원의 입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학칙 제17조에 규정한 입학자격을 갖추고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북한이탈주민
5.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제23조(전과) ①전과는 1학년 1학기말에 허가하며, 전출 및 전입 인원은 해당학과 인원의 100분의 20 이내로 할 수 있다.

②전과자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4조(재입학) ①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경우 원학년의 원학기 이하에 한하여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매학기초 소정기일 내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징계에 의하여 제명 처분된 자 및 재학연한 초과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 다만, 제적생인 경우에는 제적 후 1년 이내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④재입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통산할 수 있다.

제25조(입학의 취소) 본교에 입학이 허가된 자로서 학칙 제17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7장 등록

제26조(등록) 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절차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한 후 수강신청을 필함으로써 완료된다.

제27조(등록금 납부의무) 본교 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금의 반환) 등록금의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29조(복학자의 납입금)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해당 학기에 복학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30조(결석 또는 정학시의 납입금) 등록금은 결석 또는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1조(실험실습비 등) 실험, 실습, 실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장 휴학, 자퇴 및 제적

제32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소속 학과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휴학 및 제적) ①휴학은 일반휴학, 군입대 휴학으로 구분한다.

②일반휴학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강 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며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휴학기간은 통산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예: 자녀양육(만 8세 이하), 임신, 출산, 질병, 해외거주 등)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4학기까지 가능하다.

④군복무로 인한 경우는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⑤휴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적된다.

⑥재학연한을 초과한 자는 제적된다.

제33조의2(등록금의 반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②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34조(복학 및 복적) ①휴학자의 복학은 소정의 등록 기간 내에 허가할 수 있다.

②전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1년 이내에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복적할 수 있으며, 복적은 1회에 한한다.

제35조(삭제)

제9장 수료 및 졸업

제36조(수료 및 졸업) ①본교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한다. 졸업식은 매년 1회 시행한다.

②수료라 함은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한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본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37조(졸업 취소) 졸업생으로 학사관리규정의 학점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한다.

제37조의2(삭제)

제10장 교육과정, 교과목 이수 및 성적관리

제38조(교과목) 교과목은 공통과목 및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전공과목 중 필수와 선택의 구분은 교육과정에 따른다.

제39조(학점당 이수시간) ①교과목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점당 이수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0조(교육과정의 운영) ①본교의 교육과정은 2년에 한 번씩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장이 요청하고 교무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편을 할 수 있다.

②교육과정의 개편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각 학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위원회에서 개편안을 만들고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한다.

③교육과정 개편안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41조(과정이수 학점) ①석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45학점 이상으로 하며 복수전공은 63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대학원과정의 이수학점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2조(학기당 취득학점) ①학기당 취득학점은 15학점 이하로 한다. 다만, 복수전공의 경우에는 20학점 이하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3이상일 때 또는 특별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기당 취득학점에 추가로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제43조(삭제)

제44조(수강신청) 학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5조(수강과목의 변경 및 취소) 수강과목의 변경 및 취소는 학사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6조(출석시간)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체 수업시간의 3/4를 초과하여 출석하여야 한다.

제47조(시험)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하거나 과제를 부가할 수 있다. 다만, 중간시험을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48조(성적등급 및 평가) ①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부여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백분율
A+	4.3	97.00-100
A0	4.0	93.00 -96.99
A-	3.7	90.00-92.99
B+	3.3	87.00-89.99
B0	3.0	83.00-86.99
B-	2.7	80.00-82.99
C+	2.3	77.00-79.99
C0	2.0	73.00-76.99
C-	1.7	70.00-72.99
D+	1.3	67.00-69.99
D0	1.0	63.00-66.99
D-	0.6	60-62.99
F	0	60 미만

②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급락만 구분하여 급제는 'S' 로, 낙제는 'U' 로 표시하며, 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성적평가 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잠정적으로 'I' (미완)의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④수강신청을 하고 수강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 가 된다.

제49조(추가시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추가시험원을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성적이 확정될 때까지는 "I" 로 처리된다.

제50조(취득학점 인정) ①교과목별 성적이 'D-'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일부 교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할 경우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학사경고) 한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7에 미달되거나 6학점 이상이 'F' 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제11장 학위논문·작품

제52조(학위논문·작품) 학위논문·작품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학사관리규정 및 석사학위논문·작품 제출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11장의1 종합시험

제52조의1(종합시험)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은 종합시험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12장 학위수여

제53조(학위수여요건) 학위수여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작품 트랙은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총 4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복수전공의 경우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총 63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종합시험 트랙은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총 5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복수전공의 경우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총 69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2. 소속 학과의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복수전공의 경우 교육과정에 명시된 복수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각 과정에서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4. 석사학위 논문·작품 심사에 합격하거나 종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제54조(학위종별) 본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 2와 같다.

제55조(심의) 대학원위원회는 학위취득자격을 갖춘 자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심의한다.

제56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위수여 심의에 통과된 자에게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제57조(학위기 수여) 본교의 학위수여는 총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

제58조(학위수여의 취소) 본교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장 포상 및 징계

제59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사관리규정에 따른다.

제60조(징계) ①총장은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징계는 근신, 정학 및 퇴학으로 한다.

③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징계절차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관리규정에 따른다.

제61조(퇴학) ①제51조의 학사경고를 통산 2회 받은 자는 퇴학 처분한다.

②퇴학한 자는 본교에 재입학할 수 없다.

제14장 장학금

제62조(장학금) ①학생에게는 2년(4학기)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② (삭제)

③ 장학금 관련 심의는 대학원위원회가 맡는다.

④ 대학원위원회는 장학금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수령 인원 배정
2. 장학금 지급
3. 장학생 지도
4. 기타 장학금 관련 주요 사항

제15장 직제

제63조(직제) 본교의 직제는 직제규정에 따른다.

제16장 자체평가

제64조(자체평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에 따라 대학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5조~제67조(삭제)

제17장 대학원위원회

제68조(대학원위원회) 본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 위원회를 둔다.

제69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무행정처장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1조(위원회 소집) 위원회는 총장 및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7장의2 등록금심의위원회

제71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고등교육법 제11조2항에 의거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제71조의3(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교직원 2명(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 학생 3명, 동문 1명, 관련 전문가 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행정처장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1조의4(위원회 기능 및 소집) ①위원회의 기능은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다.

②위원회는 총장 및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8장 기획운영위원회

제72조(기획운영위원회) 본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획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3조(위원회 구성) ①기획운영위원회는 교무행정처장·학과장·학술정보원장 교무행정팀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단, 재단 관계자 1인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간사는 총장이 임명한다.

④위원회는 일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과 또는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3. 시설계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예산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외 기획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6. 기타 총장이 대학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제75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장 대학인사위원회

제76조(대학인사위원회) 본교에는 전임교수의 임명동의 및 기타 대학교원의 인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를 둔다.

제77조(위원회 구성) ①대학인사위원회는 교무행정처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전임교수 또는 교외 영어교육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행정처

장이 된다.

-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제78조(위원회 기능) 대학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전임교수의 임명 제청, 전보 제청 또는 임명의 동의에 관한 사항
- 2.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 3. 학생의 학업 및 생활에 대한 지도 능력과 실적
- 4.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9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대학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장의1 교육과정 위원회

제79조의2(교육과정 위원회) 본교의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위원회를 둔다.

제79조의3(위원회 구성) ①교육과정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본교 교원, 직원 및 외부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행정처장이 된다.

-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간사는 총장이 임명한다.
- ④외부전문가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제79조의4(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3. 기타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에 있어 심의를 요하는 사항

제20장 학생활동

제80조(학생회 등) ①학생은 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 단체는 학생자치기구이며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81조(학생 학업 및 생활지도) 학업 및 학생생활의 상담과 지도를 위하여 상담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82조(학생의 의무) ①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3조(간행물) 학생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은 학사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0장의1 장애학생 지원

제83조의1(특별지원위원회) ①본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사항

②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3조의2(장애학생지원센터) ①본교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장애학생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장 부속·부설기관 및 산학협력단

제84조(삭제)

제85조(부속기관) ①본교에 IGSE교육원, IGSE학술정보원, 파닉스연구소 등의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전항의 각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은 부속기관 규정에서 정한다.

제86조(삭제)

제86조의2(산학협력단)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의거 본교에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을 둔다.

②전항의 기관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86조의3(평생교육원) ①본교에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전항의 기관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원 규정 및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22장 보칙

제87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 및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사관리규정에 따른다.

제88조(학칙개정절차) ①본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 또는 대학원위원회가 발의하고, 5일 이상 공고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장이 학칙 시행을 위한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이상 공고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 공포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대학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0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개정학칙 이전의 재적생으로 2016학년도(본교 학사력)에 복학하는 경우에는 본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학 과 (전 공)	석사학위과정
영어지도학과 및 영어교재개발학과	50

<별표 2> 학위종별

학 위 명 학과(전공)명	석사학위과정
영어지도학과	영어학석사 (MA in TESOL)
영어교재개발학과	영어학석사 (MA in ELT Materials Development)

<별표 3>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별지 제1호 서식]

석 제 0000000 호

학 위 기

성 명 : 0 0 0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생

위 사람은 본교 00 학과 석사학위 전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영어학 석사(과별 영문 학위명
표기) 학위를 수여함.

학위번호 : 국제영어대(석) 0000-000

0000년 0월 00일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총 장

[별지 제2호 서식]

석 제 0000000 호

학 위 기

성 명 : 000

생년월일 : 0000년 0월 00일생

위 사람은 본교 소정의 복수전공 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영어학 석사 학위를 수여함.

제 1 전공: 과별 영문 학위명 표기

제 2 전공: 과별 영문 학위명 표기

학위번호 : 국제영어대(석) 2000- 000

0000년 0월 00일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총 장